

차세대장학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 계획

차세대장학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에 대해 감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정보화시스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함

1 추진 배경

추진근거

- 차세대장학시스템 구축 1단계 추진계획(서울장학재단-2227, 2023.4.17.)
- 전자정부법 제57조(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)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(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)
 - ※ 5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감리 대상이나,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진 가능
- 정보시스템 감리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21-4호, 2021.1.19.)
- 「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17조(감리시행)

감리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차세대 장학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 용역
- 감리목적
 - 차세대장학시스템 구축 1단계 용역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의 사전 예방 및 개선
 -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구축하려는 정보시스템의 완성도 제고

◆ 감리 대상사업

- 사업명 : 차세대장학시스템 구축 1단계 용역
- 사업기간 :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

- 사업금액 : *****천원
- 사업내용
 - 클라우드 서버 구성을 통한 안정성 확보(운영 및 보안 SW도입 포함)
 - 신규사업 개발, 장학금 신청항목수정, 관리자모드 개선 등 장학사업 이슈를 반영하여 확장성이 마련된 시스템 개발
 - 「신청 접수 - 심사 - 장학금 지급 및 반납관리 - 장학생 관리」 등 장학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
 - 모바일웹을 통해 디바이스에 관계 없이 시스템 이용

- 사업기간 : 2023.9 ~ 2024.3
 - 차세대장학시스템 구축 1단계 용역 사업(6개월 예정)의 계약, 착수, 종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사업금액 : *****천원(부가가치세 포함)
- 계약방법 : 제한입찰, 총액수의계약(추정가격 1억원 이하)
 -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(2인 이상 견적 제출)
 - 입찰자격제한 :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감리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

2 세부 추진계획

감리범위

- 2단계 감리 : 설계 및 종료단계 감리 실시
 -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를 할 수 있음.(정보시스템 감리기준,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-4호)
 -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(2023.1.)

감리수행 기준

-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관리, 응용S/W 개발, DB, 개발방법론, 품질보증, 시스템도입,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수행
- 감리보고서 제출 및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

보고서 및 성과품(산출물) 제출

구분	산출물 명	제출시기	제출형태
공통	감리사업 수행계획서	계약체결 후 10일 이내	전자파일
단계별 현장감리	감리계획서	단계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(설계단계, 종료단계)	전자파일
	감리수행 결과보고서	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(설계단계, 종료단계)	전자파일
	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	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(설계단계, 종료단계)	전자파일
최종	감리용역 산출물(제본)	검수 요청시	책자 (전자파일)
	감리일지, 회의록 ※감리 최종산출물에 포함	검수 요청시	책자 (전자파일)
	감리용역 산출물	검수 요청시	전자파일

3 향후 일정

과업심의위원회
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
- 심의기간 : 2023.8.8.(화) ~ 8.10.(목)
- 심의내용
 - 감리용역의 과업내용의 확정
 - 적정 사업기간 산정
-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

- 관련규정 :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3항
- 운영방법 : 위원 2인 이상(서울장학재단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1/2이상)의 심의 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(3개월 이내)

◆ 간소화 심의 대상

-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
- 상용SW 구매하는 사업
-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
-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
- 「전자정부법」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
- 「전자정부법」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사업관리의 위탁 사업

□ 사업자 선정

- 사전규격 공개(5일간) 및 입찰공고(5일간) : '23년 8월
※ 공휴일, 토·일요일 제외
- 사업자 선정 및 감리 시행 : '23.9월 ~ '24년 3월

붙임 : 1. 과업내용서 1부.

2.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 계산서 1부.